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5.12.30.>

제　　호

과태료납부독촉장

납부의무자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				
위반사항				
과태료금액			당초납부기일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　　년　　월　　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립니다.

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시장・군수・구청장　　직인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